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김종길 의원입니다.

□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7년, 93만125명이었던 서울시의 초·중·고등학생은 2022년 79만4,810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동기간 교육청이 받은 지방재정교부금은 4조6,456억원에서 7조8,57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학생은 줄었는데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재정교부금이 늘어난 결과, 지난 5년간 교육청이 불용하거나 이월한 예산은 5조

1,407억원, 용처가 없어 은행 쌓아둔 예치금은 6,656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지난 5년간 2,475억원의 '교육 경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 올해 우리나라의 세수는 약 38조원가량 핑크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가 올해 거둬들인 세수도 목표치를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이 없어 자린고비인데, 교육청은 평평 쓰고 돈이 남는데도 서울시에 손을 벌리는 '비정상'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 이에 교육청의 전전 연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인 경우,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도록 하여 서울시와 교육청 재정 간 균형을 맞추고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